www.acrc.go.kr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호남 · 제주지역)

2019. 5. 9(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2,3호

1부 -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 보상 유의사항(청탁금지제도과)
2부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 및 Q&A(심사기획과)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2019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호남·제주/영남지역) 개최 알림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신고처리 시 유의사항 등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제도 운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입체적으로 전달

○ 법 적용대상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함으로써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및 교감 강화

※ 강원권, 호남권·제주,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소재 기관 대상 개최(4~6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호남·제주권) '19. 5. 9.(목), 14:00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2,3호
(영 남 권) '19. 5. 16.(목), 14:00 / 벡스코 컨벤션홀 201~204호

○ 참석대상 : 호남·제주 및 영남지역 공공기관 등 청탁방지담당관, 청렴업무 담당자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 신고처리 관련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 설명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40	40'	청탁금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청탁금지제도과
14:40 ~ 15:00	20'	사례를 통한 신고처리 관련 사항	〃
15:00 ~ 15:20	20'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 설명	〃
15:20 ~ 15:40	20'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
15:40 ~ 16:00	20'	질의응답, 의견청취	〃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권역별 설명회(호남제주/영남지역) 개최 알림

□ 추진배경

○ 1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19. 3. 18. 구축 완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구축사업(공공기관 표준 신고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 안내 및 의견 수렴 실시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사용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참석자들의 편의 도모

※ 수도권 기관 대상 개최 예정(6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호남·제주권) '19. 5. 9.(목), 16:10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2,3호
(영　남　권) '19. 5. 16.(목), 16:10 / 벡스코 컨벤션홀 201~204호

○ 참석대상 : 공공기관의 감사(신고,청렴 등)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참석 희망자

○ 주요내용 : 1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2단계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 설명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6:10~16:20	10'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사용 설명	심사기획과
16:20~16:40	20'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용 안내	〃
16:40~16:50	10'	질의응답, 의견청취	〃

□ 행정사항

○ 상시학습 : 참석자 1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 목차 +

❖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사항 ··········· 1

❖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35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 ·························· 49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A ································ 61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사항

2019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호남·제주지역)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과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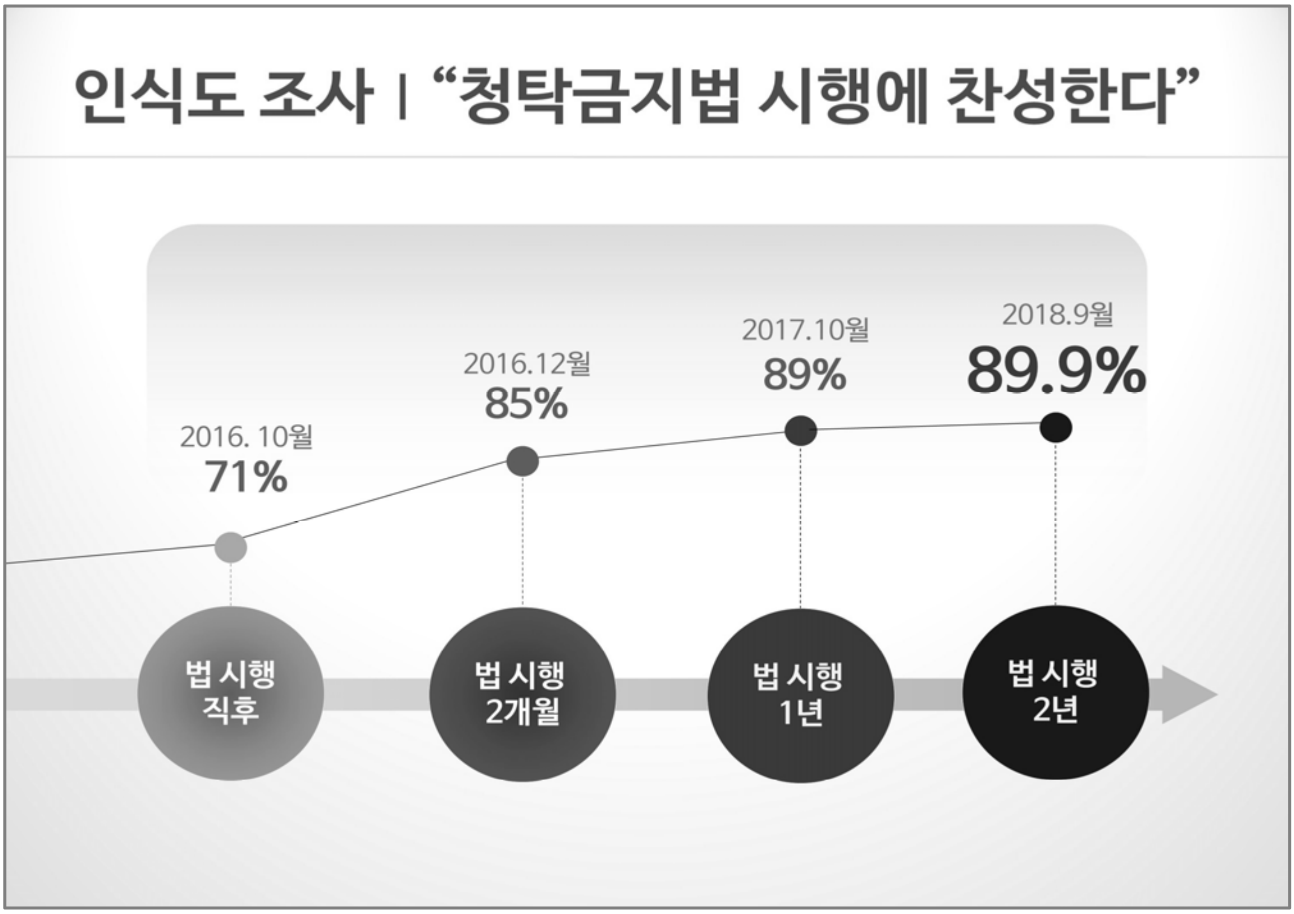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
2016. 10월
71%
2016.12월
85%
2017.10월
89%
2018.9월
89.9%
법 시행
직후
법 시행
2개월
법 시행
1년
법 시행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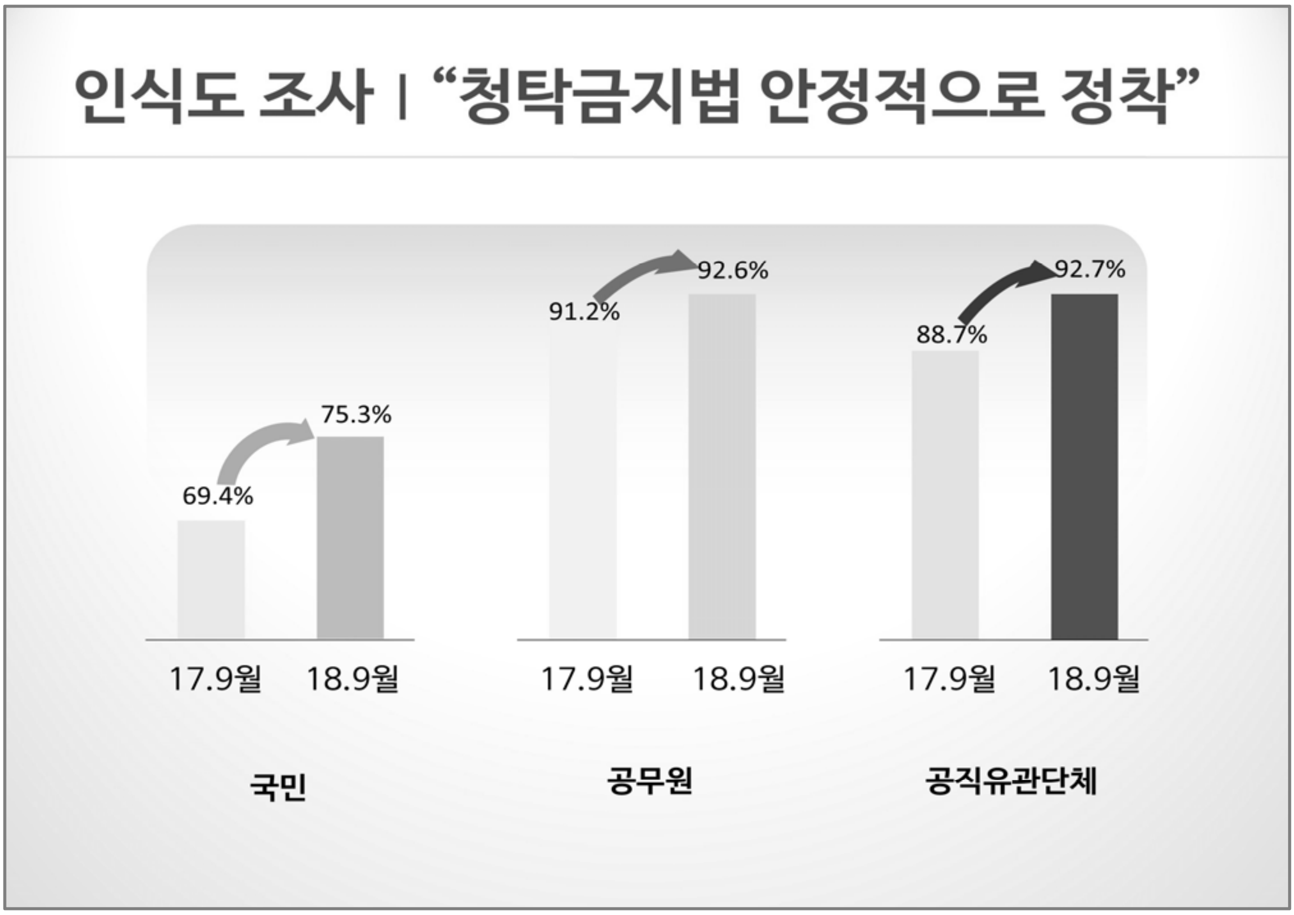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청탁금지법 안정적으로 정착"
69.4%
75.3%
17.9월
18.9월
국민
91.2%
92.6%
17.9월
18.9월
공무원
88.7%
92.7%
17.9월
18.9월
공직유관단체

인식도 조사 |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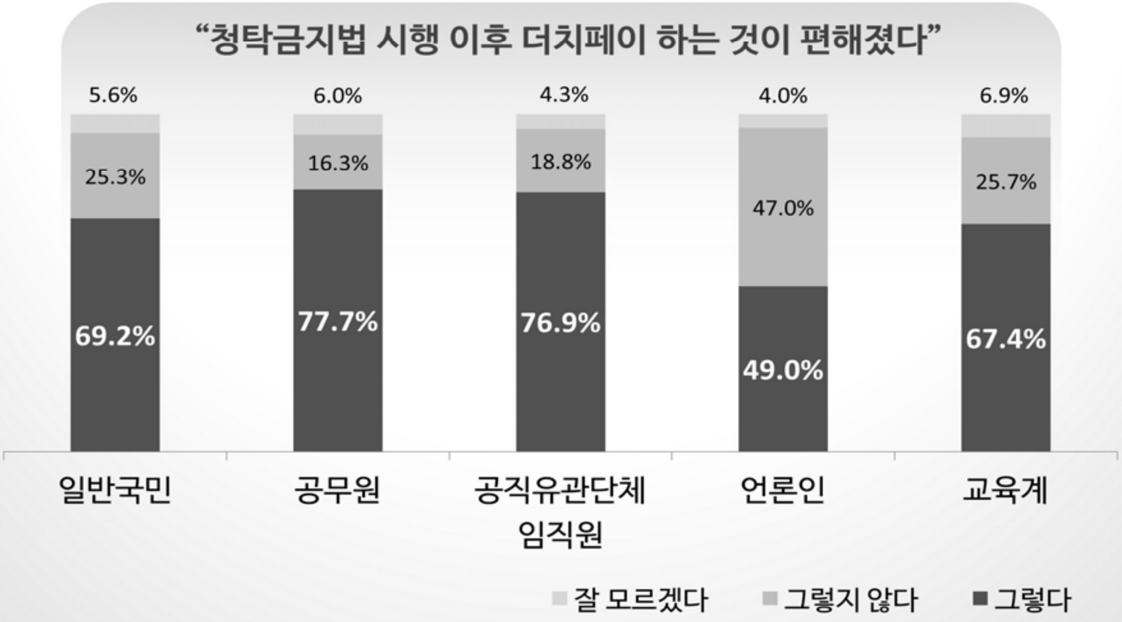

인식도 조사 | 사회생활, 업무수행에의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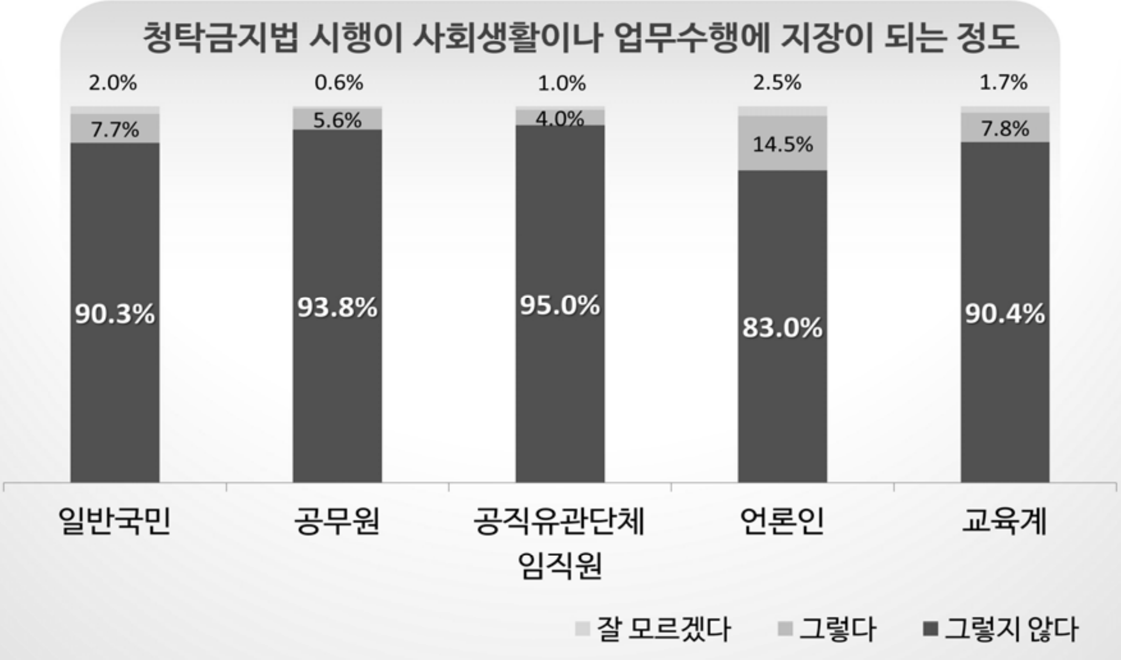

법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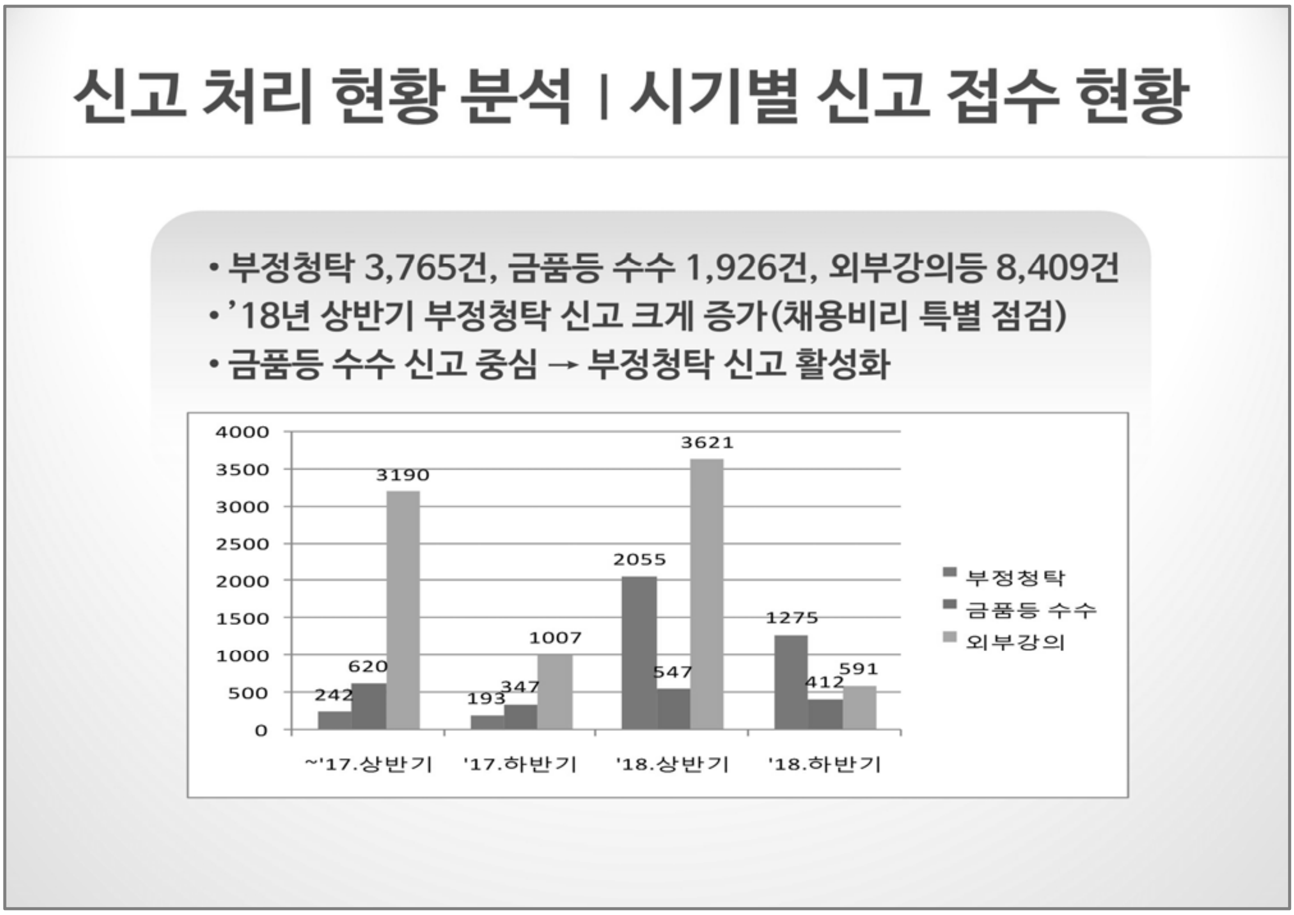
신고 처리 현황 분석 |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 부정청탁 3,765건, 금품등 수수 1,926건, 외부강의등 8,409건
• '18년 상반기 부정청탁 신고 크게 증가(채용비리 특별 점검)
• 금품등 수수 신고 중심 → 부정청탁 신고 활성화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42
620
3190
193
347
1007
2055
547
3621
1275
412
591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18.하반기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신고 처리 현황 분석 | 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조사 중인 신고 3,589건
-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제재 절차 진행 527건
- 형사처벌, 징계 등 제재 확정 181건

구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계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68	277	1	**346**
제재 확정(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9	167	5	**181**
합계	77	444	6	**527**

부정청탁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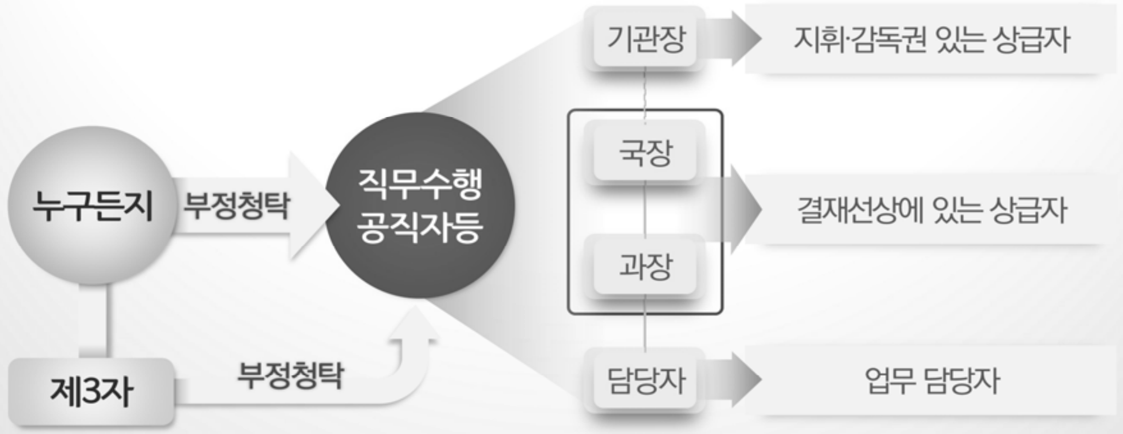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 \+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 직무 참여 일시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과태료 부과 대상 X (징계대상 O)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판례(2018과52)>

인정 사실

위반자는 20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참고 판례 >

인정 사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입학을 부정청탁

판 단

학부모는 5백만원 과태료

교장과 교감은 각각 7백만원, 5백만원 벌금

< 참고 판례(2018과157)>

인정 사실

위반자는 2017.7월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OO과 팀장으로, E를 B시청 OO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탁하여 D가 팀장으로 발령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정청탁

< 참고 판례(2018과1028)>

인정 사실

위반자는 2017.10.17. 자신의 아들로부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정청탁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8백만원과 3백만원 부과

< 참고 판례(2018과1028)>

인정 사실

공직유관단체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한 D의 아버지 A가 채용담담직원 E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뒤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내부 직원 6명에게 D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음

판 단

채용담당직원 및 면접위원들에게 위반자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참고 판례(2018과1028)>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소방서 및 부서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 문자메세지 발송

판 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부정청탁의 공개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가능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
  -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가능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 사항 공개를 통한 부정청탁 예방 목적
- 실태조사 결과 공개한 경우는 3건에 불과 → 적극적 공개 필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유형별 분석 I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약속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위반자 조OO 등은 OO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OO'의 공연제작사인 도OO의 대표이사인 윤OO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영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 판례>

인정 사실

○○지원 관내 변호사가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2만8천원을 몰래 지불한 사례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1만원(4배) 부과

< 참고 판례>

인정 사실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한 사례

판 단

제공자에 과태료 2배(9만원)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판단기준 제시

< 참고 판례(2017과214)>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시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들과 J축협 임직원들 22명으로서 함께 63만3천원 상당의 식사

판 단

방에서는 의원들과 조합장 및 간부 16명 : 54만 1천원(33,812원)

홀에서는 의원들 수행원과 축협 팀장 등 6명 : 9만 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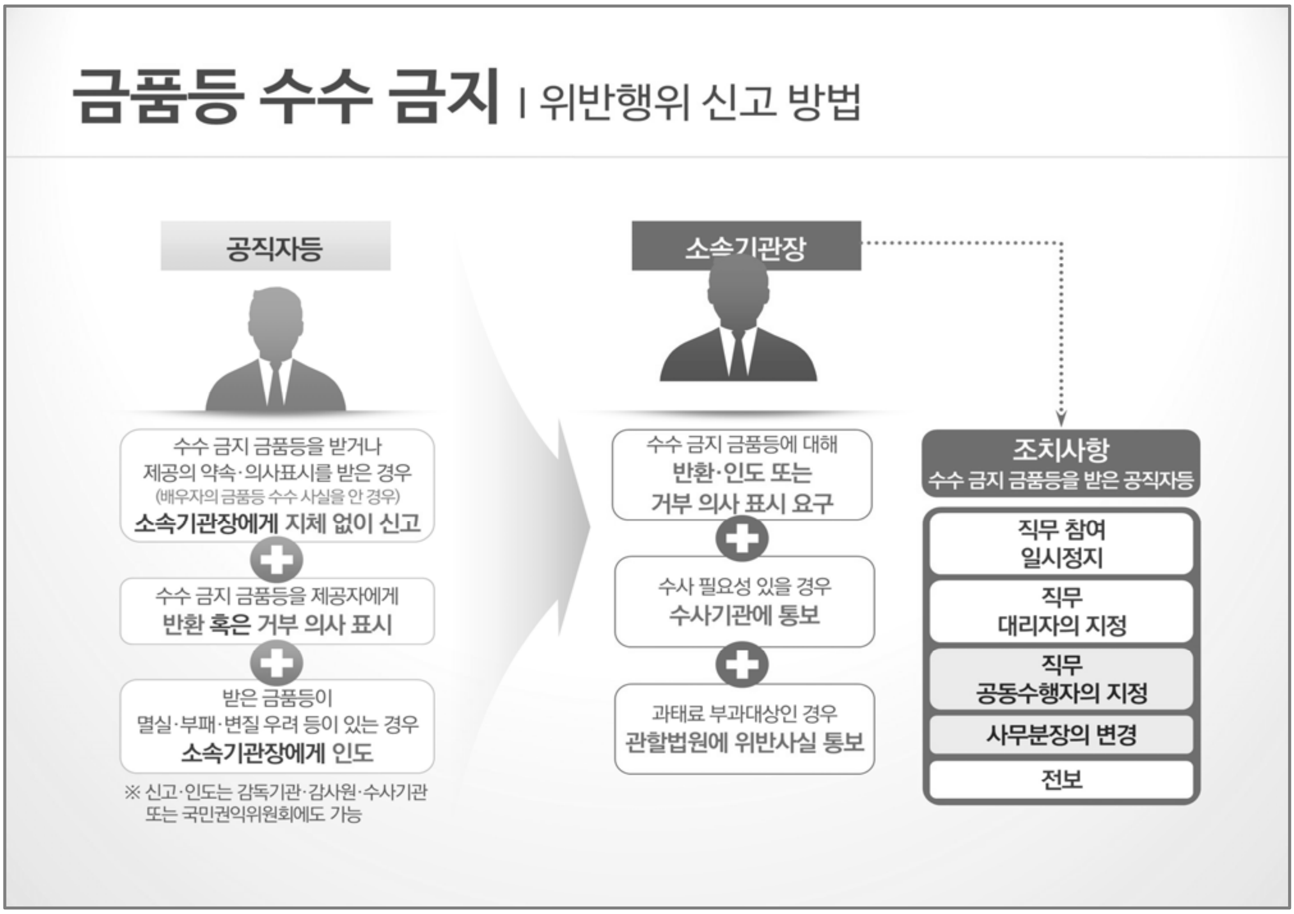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직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과 제공자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참고 판례(2017과214)>

인정 사실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현장대리인이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감리단장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판 단

제공자 소속 법인은 ① 전 직원에게 법 내용 및 준수 교육 실시, ② 위반자로부터 서약서를 제출 받고, 법 관련 해설집 배포, ③ 개별 공사현장에도 법 관련 내용을 공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 구비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유형별 분석 I 금품등 수수 금지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1,926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의뢰 408건, 제재* 확정 167건

*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관련 사례

개요	국공립병원 직원이 1년여에 걸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
제재	수수한 공직자 : 과태료 2배(400만원)

개요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의 직원이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취업사업 총괄 공직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제재	제공자 : 과태료 2배(10만원)

부적절 처리 사례 I 금품등 수수 금지

①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련 사례

개요	상급자 3인이 하급자들로부터 각 24.5만원, 4.1만원, 3.8만원 금품 수수
처리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수수자·제공자 모두 견책, 불문경고 조치

②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비

관련 사례

개요	공무원에게 진정사건의 피신고인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택배로 제공
처리	공무원은 자진 신고, 제공자인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치 미비

유형별 분석 I 금품등 수수 금지

③ 수수자·제공자 간 제재 불균형

관련 사례

개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모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 50만원을 수수
처리	수수자인 공무원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제공자인 직무관련자는 과태료 부과 요청하여 과태료 3배 부과 결정

④ 양벌규정 미적용으로 소속 법인에 대한 제재 미비

⑤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결하거나 수사의뢰가 필요함에도 종결한 사례 발생

외부강의등 사례금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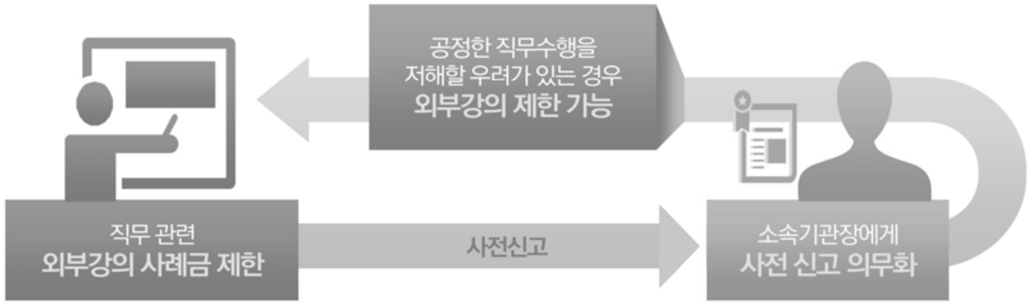

- 직무 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 상한액	100만원	4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외부강의등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징계처분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

유형별 분석 | 외부강의등

- (처리 현황) 신고 접수 8,40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건, 과태료 부과 5건

관련 사례

개 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6.9월~'17.9월 중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40만원의 사례금을 초과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기타 제도운영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 I 교육 현황

- (교육 현황) 각급 기관당 평균 4회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교육 횟수가 가장 다수

'18년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교육 횟수	평균 횟수
헌법기관	5	89	17.8
중앙행정기관	53	6,553	123.6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3,593	13.8
공직유관단체	1,141	7,417	6.5
학교·학교법인	19,863	68,148	3.4
계	**21,322**	**85,800**	**4.02**

제도 운영 현황 I 상담 현황

- (상담 현황) 각급 기관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질의답변 횟수는 총 19,532회로, 기관 평균 0.9회 실시

'18년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상담 현황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상담 횟수	평균 횟수
헌법기관	5	98	19.6
중앙행정기관	53	2,876	54.3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4,034	15.5
공직유관단체	1,141	3,881	3.4
학교 · 학교법인	19,863	8,643	0.4
계	**21,322**	**19,53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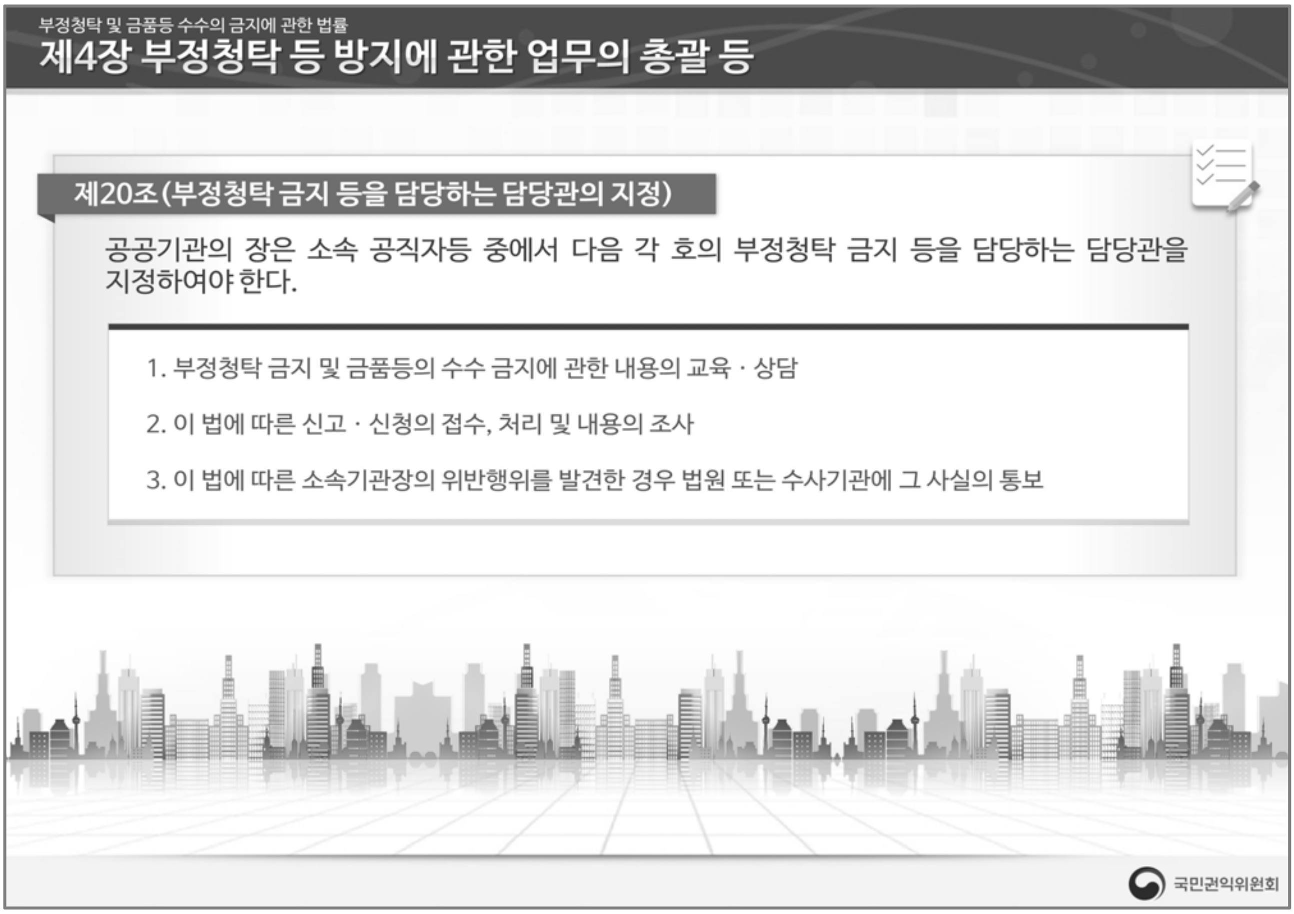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상담
신고 접수·조사 등 처리
소속기관장 위반행위 처리

제도 운영 현황 I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지정(99.8%)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담당관 지정기관	미지정 기관(지정률)
헌법기관	5	5	0(100%)
중앙행정기관	53	53	0(100%)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260	0(100%)
공직유관단체	1,141	1,138	3(99.7%)
학교・학교법인	19,863	19,816	47(99.8%)
계	**21,322**	**21,272**	**50(99.8%)**

사례를 통한 신고처리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례 ①

개 요

피신고자1 내지 5는 ○○공단 ○○지사 검사관들이다.
피신고자1 내지 3은 인허가를 신청한 A와 C업체에 점검을 나가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의 직원으로부터
○○한정식에서 개인당 2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피신고자4 내지 5는 C업체 D부서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한정식에서 동일한 점심식사를 제공받았음

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상 황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와 C업체는 인허가 신청과 관련한 점검 대상 업체인 점, 인허가 신청과 관련한 점검으로 알게 된 관계인 점, 점검 중에 식사가 제공된 점 등 고려

보완점

-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이 관련 교육을 하고, 평소 예견되는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 또는 관심을 가졌다면 …

사 례 B

이첩 사례 ②

개 요

피신고자1은 ○○시청 민원봉사과장이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시청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다.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 내지 21로부터 '01. 1. 1부 공로연수에 따른 퇴직기념 선물 명목으로 980,000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50,000원씩 갹출하여 피신고자1에게 위 금열쇠 및 꽃다발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확인 1. 직무관련성

○○ 시청의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에 피신고자2 내지 21은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였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 내지 21을 포함한 민원봉사과 일반직21명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 내지 21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확인 2. 금품 가액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100만원을 모금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 가담한 경우 각자 위반행위로 간주)에 해당하며, 수수·제공 가액은 100만원으로 판단

확인 3. 예외사유(제8호) 해당 여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하급직원들은 조직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갹출할 수 밖에 없는 반강제성이 있는 점, 직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관례이거나 사회상규라고 볼 수 없음

관할 법원 판단

공개적으로 금원을 갹출하여 퇴직기념품을 마련한 점,, 피신고자1이 기념품을마련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얼마씩 갹출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 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과태료 불처분 결정 이유 불명확, 권익위의 유권해석 변경 없음

< 참고 판례(2018과1415)>

인정 사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인 위반자는 2016. 12. 30. C와 함께 상급자에게 퇴직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위반자 부담 50만원)를 선물하고, 2회에 걸쳐 하급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 부과

작은 일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

독일어 GIFT

선물 여성 : 마음의 표시

독약 중성 : 양심을 병들게 하는 독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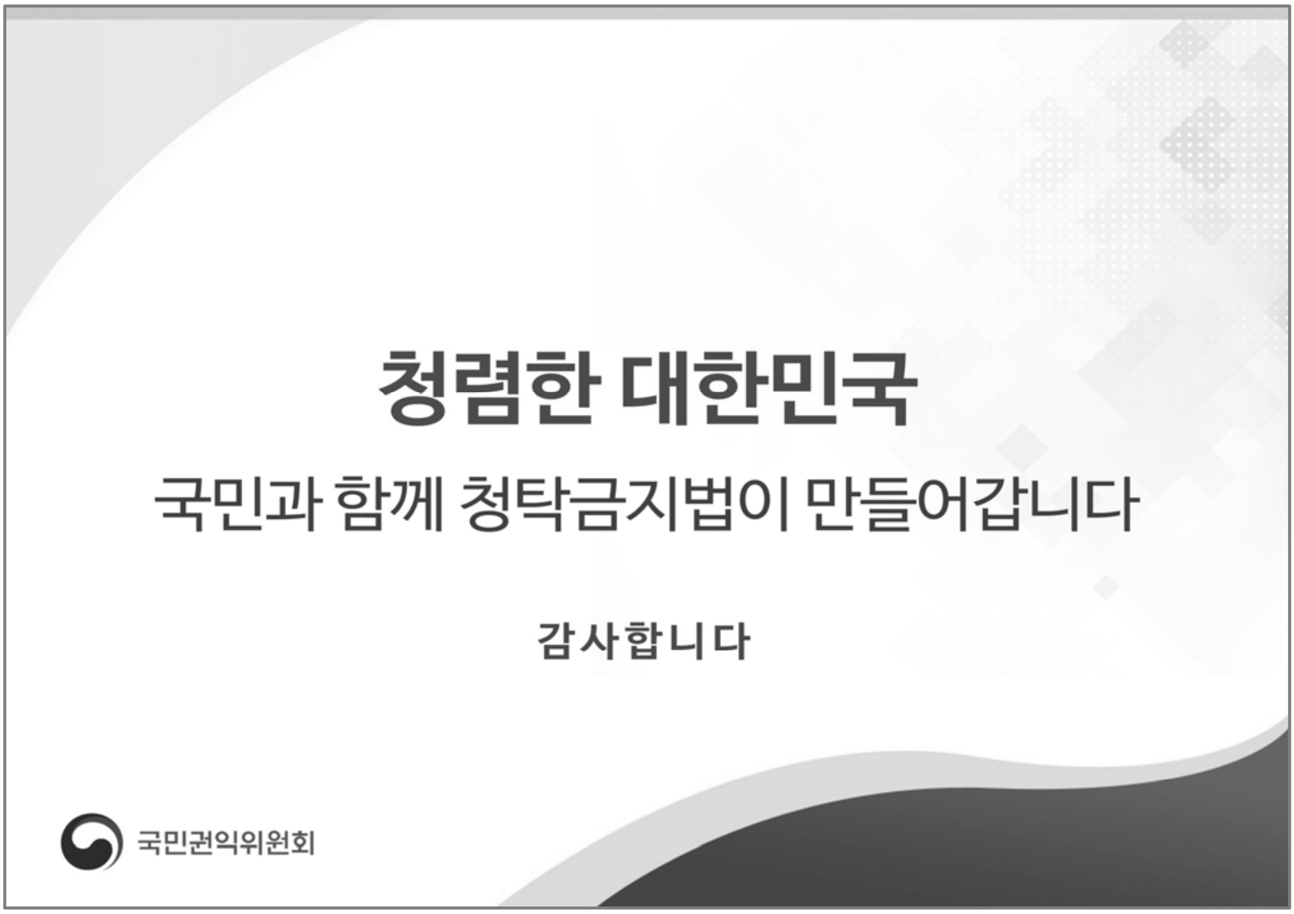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목차

I. 신고자 보호제도

II. 신고자 보상제도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비밀보장 제도

신분노출 금지	비밀누설 금지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 공직자 (신고, 처리업무수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1 | **상담. 신고 접수 등 단계에서 비의도적 비밀보장 위반 유의**

- ✓ 감사부서 담당자 등 관련자는 접수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등 조치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신고자 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2 | **사건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 ✓ 접수 경로를 막론하고 **모든 민원에 신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신고에 준하여 처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임의 노출 · 공개 · 보도 되지 않도록 유의

- ✓ 신고자 연락 시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조사결과 등 통지**
- ✓ 현지조사 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신고 관련 서류를 휴대하지 말고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 요약하여 참조**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2	사건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 ✓ 출장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기관 장비 사용 후에는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등 보안 유의
- ✓ 관련 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신고서 발송 대신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송부**
-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3	신고 업무 유관 담당자 보안 서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징계 강화

- ✓ 기관별 접수. 조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 및 신고자 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4	기관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 대상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강화

- ✓ 신고자 보호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신고자 정보 노출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2.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신변 보호 요청

신변 보호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불이익 조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그 외 신분상, 근무상 불이익조치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 강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유형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조치 금지 권고, 보호조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조치 사례

사례1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설계비 과다 지출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하향 전보"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요구,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사례2

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금 과다지급 사실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해임처분"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
기관장에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기타 보호제도

- 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불이익조치의 추정

II. 보상금·포상금 제도
보상 ·포상제도
신고 활성화에 도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부정청탁예방 및
척결에 기여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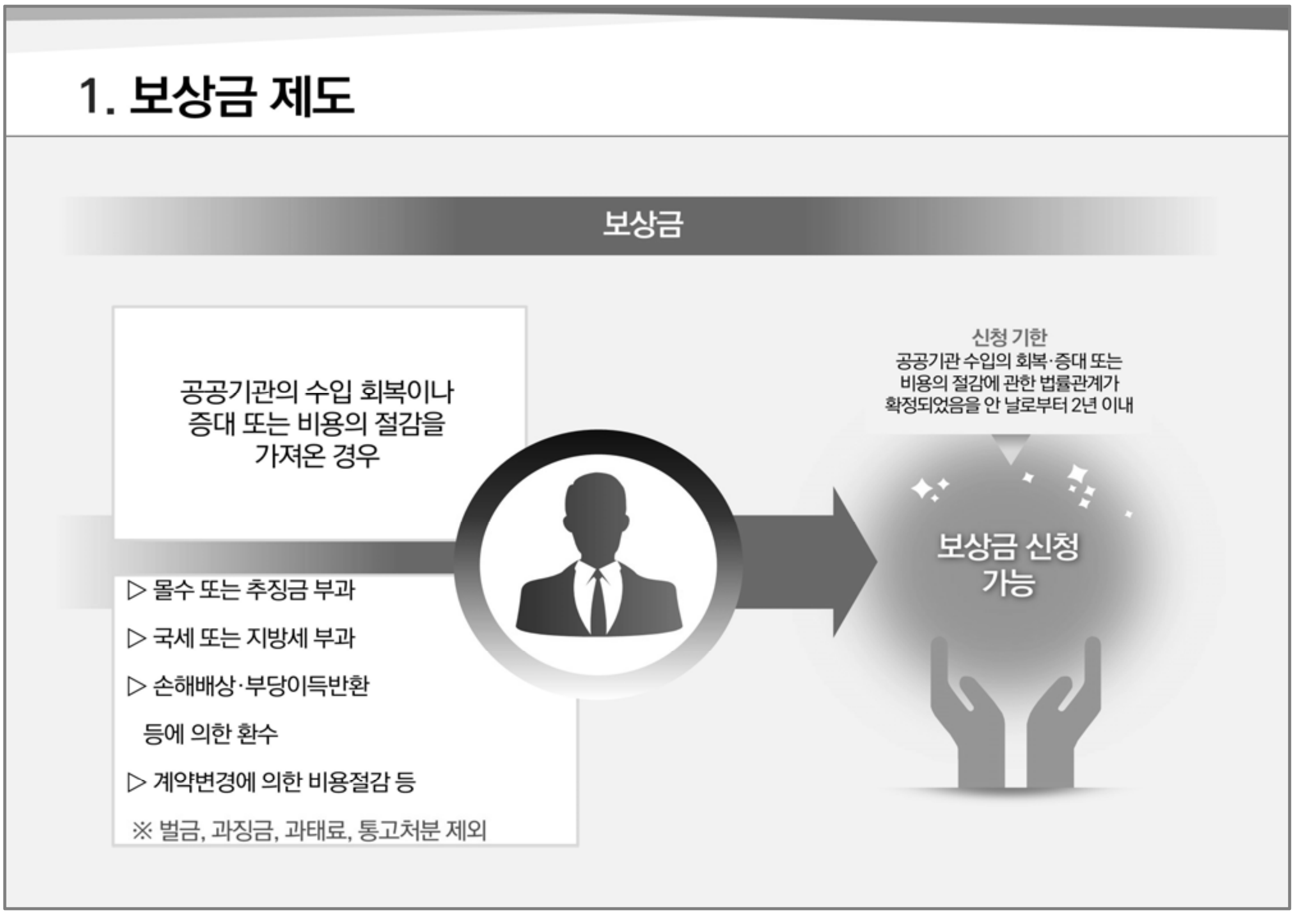
1. 보상금 제도
보상금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신청 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신청
가능

2. 포상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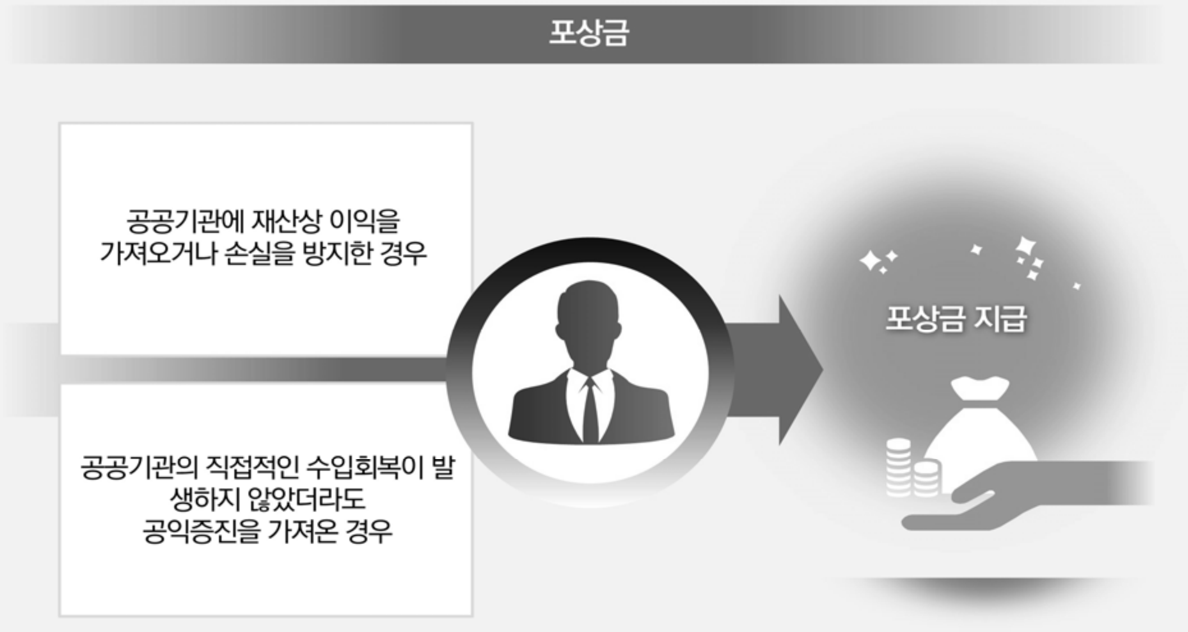

보상금 지급 사례 (부패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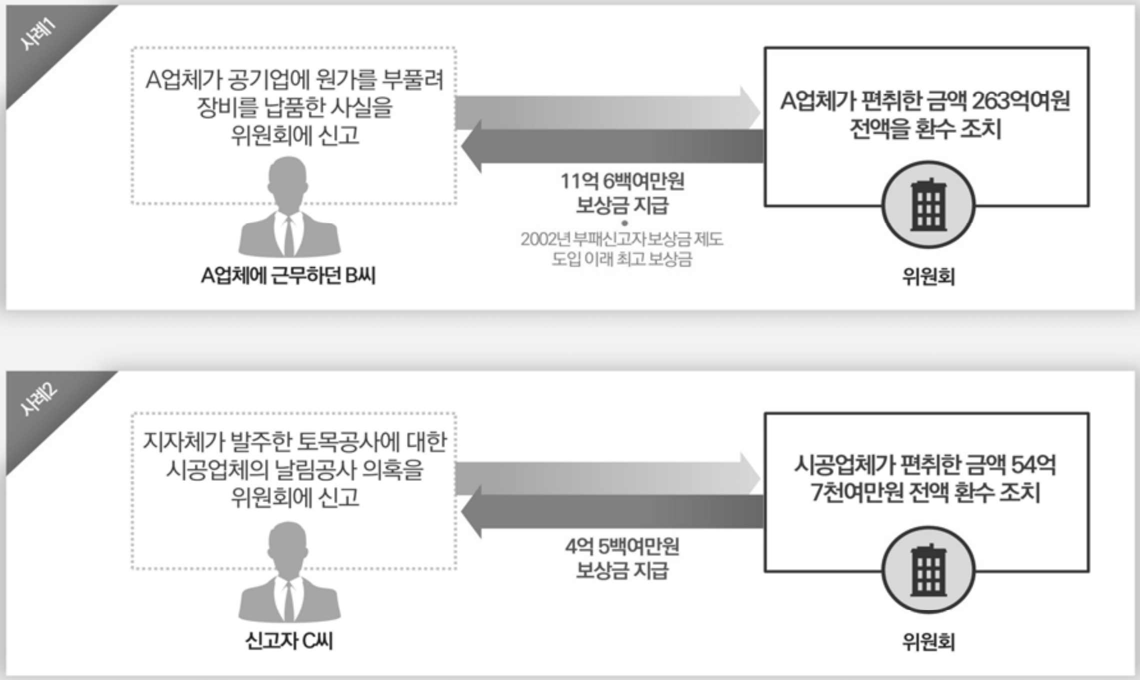

포상금 지급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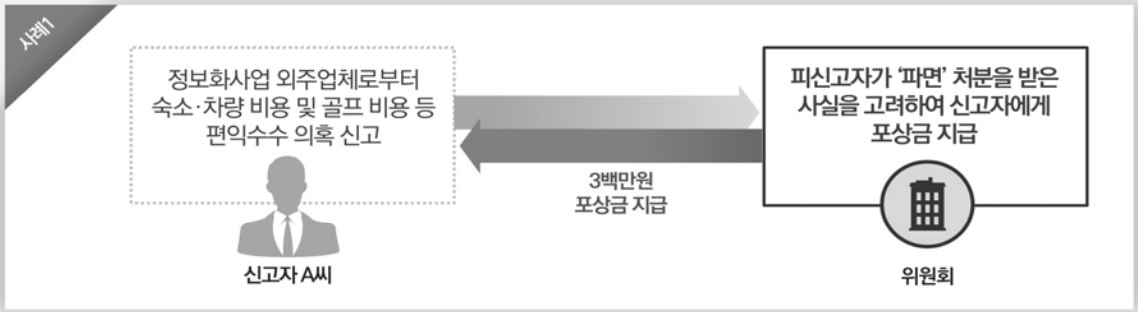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설명자료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사용 설명자료

1. 시스템 개요

☞ 공공 청렴e시스템((구)제로미)을 통해 이첩 · 송부 사건 처리, 부패영향평가 이행관리, 시책평가 자료제출 및 결과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등 각종 반부패 업무를 처리 및 조회

웹 주소 : http: ep.clean.go.kr　　헬프데스크 : 1811-8338

1-1. 업무 역할 정의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자	기관 사용자
•신고 사건 이첩·송부 •반부패 자료 제출 요청 •반부패 정보 등록	• (기관 내) 사용자 권한 부여 및 해제 • 통합 접수 • (기관 내) 처리 지연 및 이행 현황 관리	•권한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현황 관리 ※ 부패영향평가이행관리 등 •권한에 따른 자료 조회

1-2. 메뉴 구조도

부패신고사무	조사 · 평가	비위면직자 조회	마이페이지	검색서비스	기관운영자	청렴e소개
통합접수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나의업무 현황	사건검색	기관부서관리	공지사항
사건처리	비위면직자 관리			자료검색	기관사용자관리	정보 공유방
이행관리	시책평가			통합검색	사용자권한관리	
신고자 보호조치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상금 관리	실태조사 -공익신고 운영실적 -부패방지 교육실적					

2. 업무 요약

2-1. 청렴e시스템 기관운영자 업무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통합접수, 담당자 배정	• 권익위에서 요청된 반부패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을 접수 및 담당자 배정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기관 사용자 권한부여	• 해당 기관의 시스템 사용 신청자 승인 및 해제	기관운영자 〉 기관사용자 관리
기관 사용자 권한 관리	• 해당 기관의 사용자에 대한 권한 추가 부여 및 해제 등 권한 관리	기관운영자 〉 권한설정 관리

2-2. 청렴e시스템 일반사용자 업무

2-2-1. (부패신고 사무) 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이첩·송부사건 처리, 보호에 대한 조치 실적 제출 등을 처리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신고 관련 자료 제출	• 부패·공익 등 신고 관련 권익위의 자료 요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신고 관련 조사·조치결과 제출	• 권익위에서 부패·공익 등 신고 관련 이첩·송부 한 자료에 대한 연장신청, 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조사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관리	• 권익위에서 부패·공익 등 신고 관련 이첩·송부 한 자료 처리지연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반기별 점검 관련 이행실적 제출	부패신고사무 > 사건처리 > 사건처리
신고자 보호조치	• 권익위에서 보호 관련 조치 요청한 사항에 관련 자료 제출	부패신고사무 > 보호조치
신고자 포상 추천	• 해당 기관에서 신고 접수·처리한 신고자에 대하여 권익위에 포상 대상자 추천	부패신고사무 > 신고자 보상금 관리
사건검색	• 신고사건에 대한 내역을 조합검색	검색서비스 > 사건검색

2-2-2. (조사 · 평가)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제출, 비위면직자 관리,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이행실적 등을 처리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실적 제출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제출하고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수정	조사·평가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비위면직자 관리	• 비위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변경,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 의견 제출, 취업제한자에 대한 기관 이행조치 등 비위면직자를 관리	조사·평가 〉 비위면직자 관리
시책평가	• 시책평가 관련 실적 보고서 및 제출자료 보완, 이의 제기 등을 처리하고 평가결과를 확인	조사·평가 〉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 제 · 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의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등을 처리	조사·평가 〉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 공익신고 운영실적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 실적을 입력	조사·평가 〉 실태조사

2-3. 청렴e시스템 사용자 공통

업무명	업무설명	메뉴위치
나의업무화면	• 권한에 따라 처리 요청된 반부패 업무 확인 및 처리 지연 현황 등 나의 해야 할일 조회 * 기관운영자는 기관의 전체 반부패 업무에 대한 지연 현황 등 조회	첫 화면
통합검색	• 청렴포털에 게시된 반부패 정보에 대하여 첨부 문서까지 통합 검색하는 화면	검색서비스〉 통합검색

3. 시스템 권한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승인요청→ 승인→로그인→인증서(GPKI/NPKI 등) 등록
: 승인의 경우 기관운영자는 권익위에서 승인, 기관일반사용자는 기관운영자가 승인

3.1.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①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선택하여 신청화면(팝업)을 불러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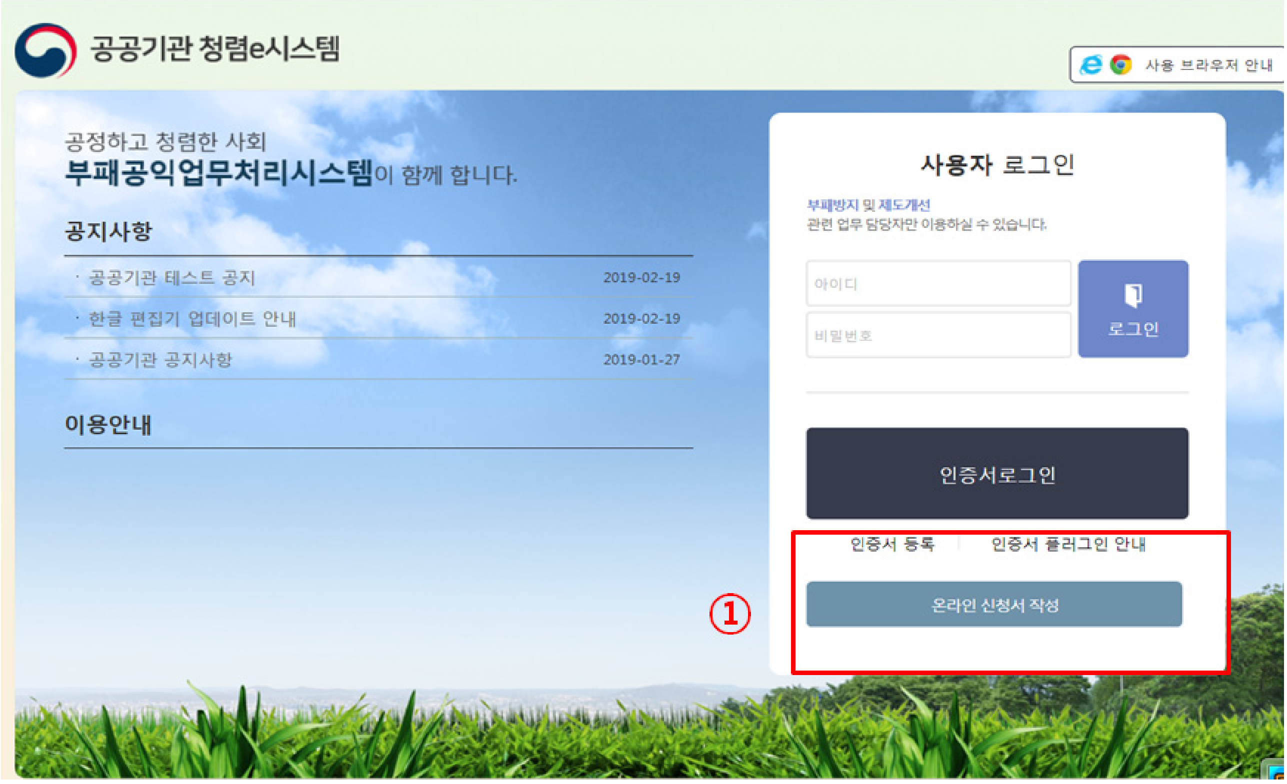

3.2. 승인 요청

② 기관운영자의 경우 권익위에 공문 수신기관은 반드시 공문(사용자 계정 ID, 성명, 부서명 기재)으로 승인을 요청

※ 공문 미수신 기관은 내부 결재받은 신청공문을 반드시 추가로 첨부한 후 '저장 및 승인요청' 버튼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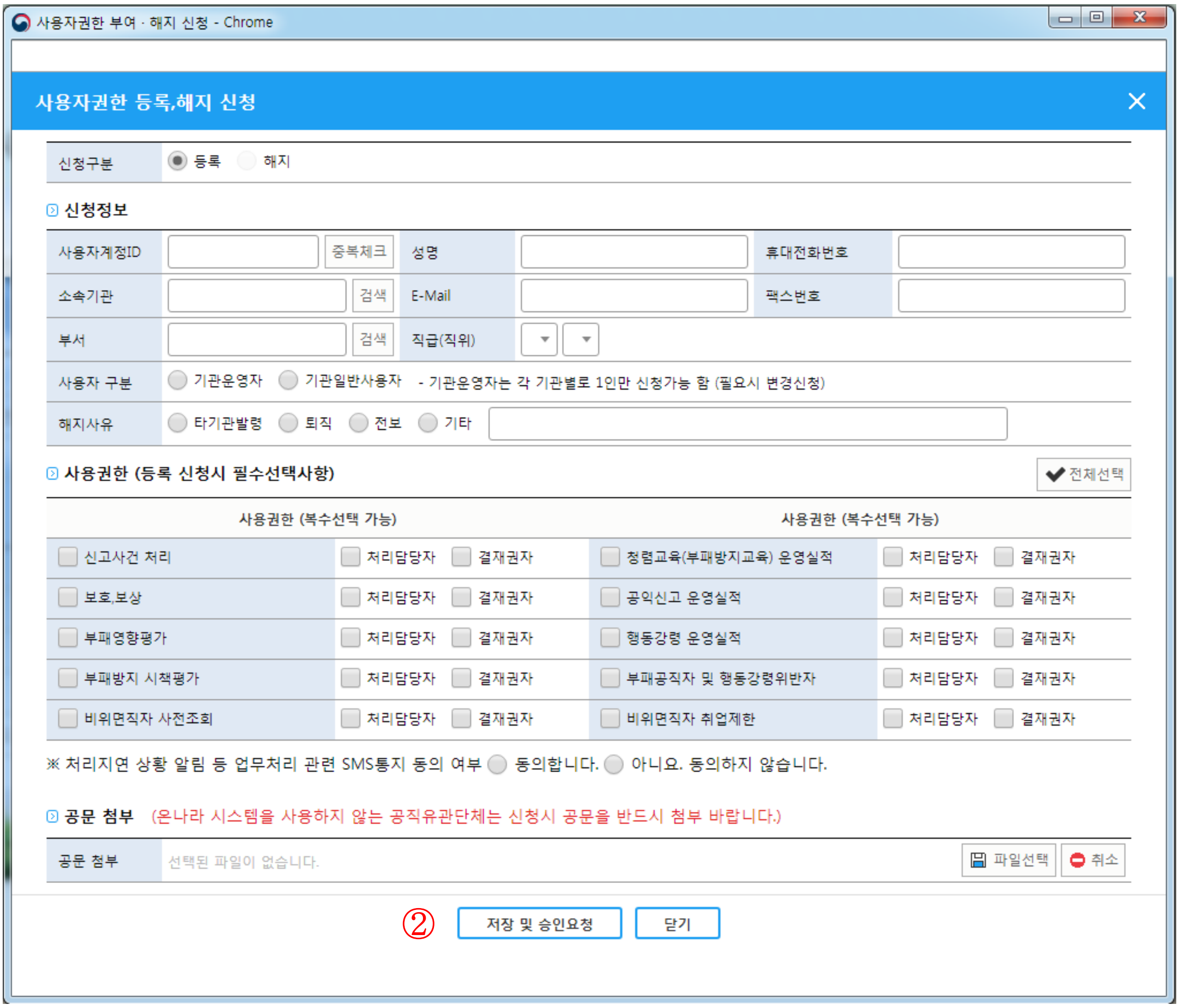

3.3. 승인

③ 승인요청 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등록된 휴대전화로 승인내역이 문자(SMS)로 사용자 아이디가 통보됩니다.

3.4. 인증서 등록

④ 최초 접속시 SMS로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 및 각 공공기관에 맞는 인증서(GPKI/EPKI/NPKI)를 반드시 등록하시고 이후 로그인 시는 해당 인증서를 통하여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4.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경사항
업무기능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입력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청렴교육 실적 입력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의견 등록, 실적 입력 및 **추가 자료 제출, 평가보고서 조회 등**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청렴교육 실적 입력 ■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이행결과 입력·관리** ■ **비위면직자 관련 직무관련성 자료 제출 및 이행관리 등** ■ **이첩·송부 및 보호·보상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리 등** ■ **공익신고 운영 실적 입력**
관리기능	없음	■ **사용 권한에 따른 해야 할 업무를 나의 업무 현황으로 제공** ■ **통합검색 서비스**
권한	■ 권익위에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	■ **권익위는 관리자 권한을 청렴업무 담당자에게 부여** ■ **세부 기능별 사용자 권한은 각급 기관 담당자가 부여** ■ **이용자가 90일 이상 미접속시 권한 차단·중지**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소개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2단계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고 등 소관의 반부패 업무를 처리,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 업무처리 시스템임

- **국민들은** '청렴포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부패, 공익,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청렴e시스템'을 통해 **사건 유형별 지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부패방지 업무처리 절차 진행
- **권익위는** '청렴e시스템'을 통해 **반부패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반부패 분석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 가능

□ 추진배경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의 환류가 중요하나 관련 시스템 미비**

○ 이에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해 달라는 요구 등이 제기

□ 추진내용 (붙임)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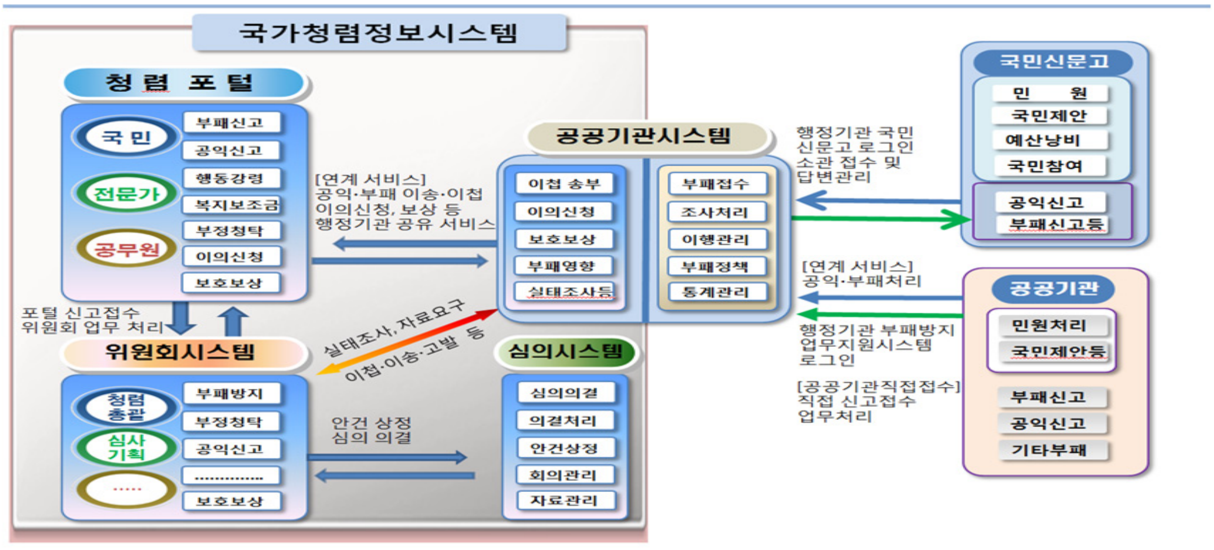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반부패 서비스 제공

- (신고접수) 공공기관의 신고에 대해서도 **원스톱 신고·신청 및 자동 알림 서비스를 마련**하고, 축적자료를 DB화하여 **신고도우미 기능 등 제공**

※ 신고유형을 모를 경우 간편 신고 작성 제출 시 시스템이 신고 유형을 자동 분류하여 제공하고 유형별 부패·공익 사례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토록 지원

- (보호보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보호신청**이 가능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이력 관리·조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 강화 및 중복지급을 방지

※ 보상금 및 보호 신청 건에 대해 권익위, 공공기관 간 공동 DB구축을 통해 신고 접수, 진행현황, 조사결과 등을 공유 활용

- (반부패정보) 공공기관(청렴e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손쉽게 공개할 수 있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원하는 반부패 정보 공개** 가능

○ 공공기관으로 제출되는 서면 신고건 및 자체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개별 관리하던 **신고사건에 대한 통합 · 활용체계 구축**

- **업무처리 및 관리사항에 대한 알림기능**을 통해 조사관의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

※ (참고) '19년말 신고 통합 및 보호·보상 연계 관리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상의 공익 신고 기능을 폐지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으로 신고 기능 일원화

- **신고 사건에 대한 지식서비스** 제공 및 신고처리 전 과정(신고운영현황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집계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수행을 위해 **반부패 정보의 분석·통계·검색** 기능 제공

- (권익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청렴도 등 비교 및 부패유형별·연도별·기관별 상호 추이 등 분석
- (공공기관) 시스템 입력·처리 자료에 대하여 기관유형별, 연도별 추이 분석 및 키워드 분석 등(단계적 추진 '19년 통계기반, '20년 분석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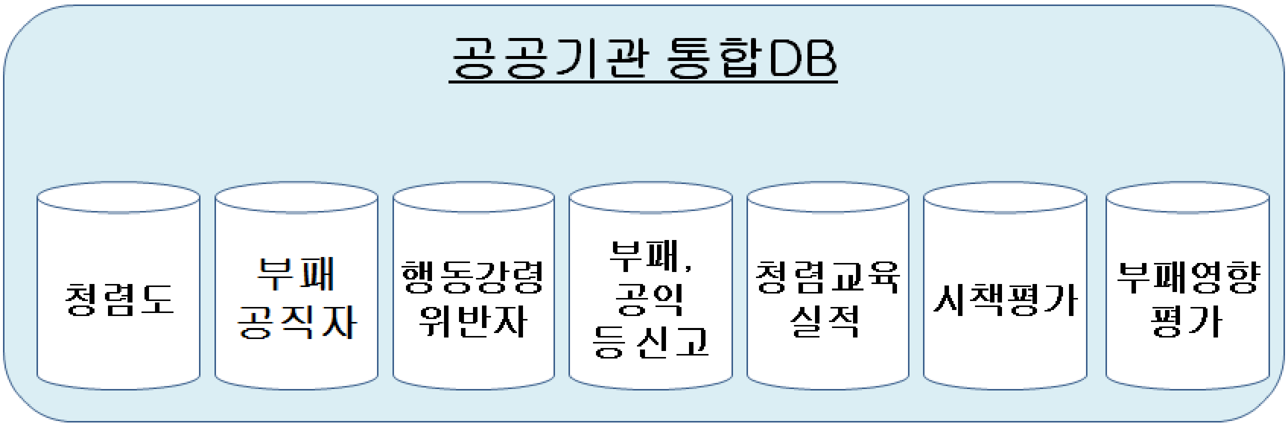

□ 추진일정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 · 3단계 구축 관련 의견수렴 ('19. 4월)

○ 2단계 실무추진단 구성 ('19. 5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착수 ('19. 5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설계안 관련 의견수렴 ('19. 7~8월)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 및 보급 ('19. 12월)

붙임 국가청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구분	현재 (AS-IS)	구축 시스템 (TO-BE)
접수 신청 등	‣ 권익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접수 기능 제공	‣ 공공기관에 온라인 신고, 보호, 보상 접수 기능 제공 ‣ 권익위 제작 신고 사례 검색 메뉴 등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 ‣ 권익위 보호신청 프레임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가능
처리	-	‣ 공공기관의 서면 접수 및 위탁 신고 창구 등에 대한 통합 처리 기능 제공 ‣ 신고 처리 시 개인정보 자동 변환, 블랙마킹 등 지원
사후 관리	-	‣ 권익위 이첩·송부 및 공공기관 자체 신고 사건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 기능 제공
보호	-	‣ 공공기관의 신고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보호 모니터링 기능 제공
보상	‣ 보상금 신청건마다 관련 기관 등에 조사결과 등 자료 요청 및 추적	‣ 권익위 보상 자료 요청건에 대해 별도의 자료 제공 없이 공동 DB를 통해 정보 제공 가능 ‣ 공공기관 보상금 신청 접수건에 대해 공동 DB를 통해 권익위 보상금 지급여부 조회 가능
지식	‣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검색, 활용 불편 ‣ 반부패 정보가 개인 PC, 공문, 시스템 등에 산재하고 있어 정보 검색, 활용 곤란	‣ 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고 사례 등 시스템을 통한 지식서비스 제공 ‣ 반부패 정보가 모두 시스템으로 관리 ‣ 청렴도, 시책, 부패공직자, 신고 등 반부패 정보에 대한 등에 대한 공공 기관 맞춤형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운영 현황 관리	‣ 신고와 민원을 같이 접수·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 등 불가 ‣ 신고 운영 실적을 수기로 집계하여 제출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불편 ‣ 범국가적 신고 통계 집계 및 자료 분석 불가	‣ 유형별 신고의 통합접수 기능 제공으로 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출 가능 ‣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운영현환 자동 집계 및 제출 ‣ 신고에 대한 종합적 통계 집계 및 정보 분석 가능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A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활용
국가청렴정보시스템 Q&A

심사기획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법 등 제정에 따라 신고 접수·처리에 있어 편리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지속적 요구가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등에 따라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중 2019년도 제공되는 **공공기관업무처리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을 유지시키며 다음 서비스를 제공함,** 신고인이 해당 공공기관에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한 건을 실시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제공하고,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는 신고서 등이 제출된 경우 쉽게 알 수 있도록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신고에 대한 유사 처리 사례 검색, 위반유형 식별 등에 대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 제공으로 부패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누락 방지와 2019년 청렴도 등 반부패 정보를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에 절차 설계 완료 후, 2020년 자체 신고 접수 건수 등 다양한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하면서, 개별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가질 수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 서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 도입의 강제 여부
2.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3. 개별 온라인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신고창구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은
5. 신고 접수 창구 이용 시 권익위에서 사건 조회 등이 가능하지 않은지
6. 개별 공공기관에서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7. 공공기관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8.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9. 개별 공공기관들의 별도예산 소요 여부
10.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11. 보상제도 이용 기능 신청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12.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13.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제로미와 관계는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 도입의 강제 여부

Q 공공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A <u>모든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나, 강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u>

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 청탁금지 위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접수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관리 할 체계적 시스템 미비로 사후관리 누락 우려 등 관리 부실 및 축적된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이 곤란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u>개별 구축에 따른 예산중복의 방지, 시스템구축 경험을 활용한 개발 효율성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목표로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u>하는 것입니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이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경우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스템 보급에 따라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상 등 처리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고인" 관련 보상금 지급 여부를 상호 확인 신속하게 처리는 물론 실태조사 등 취합시에도 실태조사서 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조사서가 작성되고 위원회 통보로 해결 하는 등 간편 행정으로 단순 반복적인 조사서 작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 사례 등을 업무에 활용하여 284개 공익 유형을 자동분류해 주는 등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Q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개별 소속기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개별 공공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관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을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권한을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은평구에서 소속기관을 은평구 관리자가 직원과 소속직원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사무국

3. 개별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Q 기존에 다양한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A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더 이상의 기능이나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청렴포털에 신고 창구 연계를 통해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게 기능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고접수 창구는 있으나 신고 유형에 따른 위반유형 분류 및 수사의뢰 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등 체계적 관리 기능이 없는 공공기관에서는 신고 접수 창구는 다양하게 유지하면서 접수 관리 기능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전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구축되는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수집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부패방지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 구축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이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익명신고 시스템 및 개별 신고 접수 시스템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는지

Q 익명신고 시스템 및 개별 홈페이지 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처리 및 관리 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 부패방지 업무처리 시스템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을 '공공기관 청렴e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시스템'은 원하는 경우 표준 체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축되는 시스템입니다.

5. 개별 공공기관에서 부패, 공익 등 외에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Q 개별 공공기관에서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기능 제공도 가능한지

A 공공기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부패'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청탁'을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개별 공공기관에서 고정된 명칭(부패, 공익 등)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접수받고 있는 신고접수 창구 명칭 사용 등 유연하며 확장성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6. 신고 접수 창구 이용 시 권익위에서 사건 조회 등이 가능하지 않은지

Q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신고 접수 창구 이용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신고사건을 조회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A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구성 됩니다.

공공기관의 시스템 영역에 대한 접근은 공공기관 관리자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시스템 작업은 사전 통지하에 추진되고 작업 이력은 공공기관 관리자의 모니터링 대상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개별 신고사건에 대한 조회가 불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공기관에 신고 접수 후 권익위에 보호, 보상 신청한 건 및 전체 통계만 공동 DB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동구역”에 두어 상호 보상 등 참조시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록은 이력으로 남아 누가 언제 정보를 참조하였는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 누가 참조하였는지 이력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공공기관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Q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어떤 편리성 및 이점이 제공되나요?

A 첫째,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신고자 보호 가이드에 따라 신고 사건에 대한 접근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의 암호화 관리, 신고자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등 강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식D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DB는 절차 및 관리 사항안내, 위반유형 식별 등 전반적인 신고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잘 알지 못하는 담당자라 하더라도 '신고처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음절차 안내 흐름 지원 서비스를 대하면 쉽게 신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신고 유형별 주간·월간·연간 통계 등 각종 통계를 실시간 원하는 양식으로 조회하여 활용,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익신고 운영 실적 등 자료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작성 없이 손쉽게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접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일일이 당사자에게 진행 사실을 알려줄 필요 없이 정해진 절차 단계에 대하여 SMS로 자동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2020년 공공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 사건 등에 대한 키워드 및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통합한 분석 서비스로 반부패 정보에 대한 정책환류가 가능합니다.

8.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편리성 및 이점

Q 신고자에게 어떤 편리성 및 이점이 제공되나요?

A 메일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신고를 접수 받는 공공기관에 최신 사이버 침해에 안전한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다양한 공공기관에 안심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홈페이지 등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19년 오픈하는 청렴포털에 신고창구 연계를 통해 신고자가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외에 신고 사례 검색 및 보호신청 등 신고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서도 처리 단계별로 접수 사실과 처리 단계를 SMS, 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주소 변경, 신분공개 동의 변경 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권익위에 보호, 보상 신청 시 통합 DB를 통해 신고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신고 관련 이력을 활용하여 보호, 보상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관련 중복 정보 입력 없이 편리하게 보호,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보호, 보상 신청건에 대한 사건 추적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보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9. 개별 공공기관들의 별도예산 소요 여부

Q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개별 공공기관들이 별도 예산을 배정 해야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A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이용하기에 기본업무인 ‘공통부분’과 공공기관별 특성 부분을 잘 구분하여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추가 개발하지 않고 유지보수 수준에서 원만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을 위원회에서 기술 지원하고 기관에서 내부 연계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10.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Q SMS 서비스 등에 따른 비용 부과는 언제 발생하며, 얼마인지?

A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단계별 정해진 절차에 대하여 SMS 통지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부패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확보에 따라서 무상 지원 또는 유상지원이 될 예정이며,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접수, 처리 등 단계별 통지 시 단문 8원, 장문 27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Q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요?

A 보상제도 이용 기능은 자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신고건에 매칭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자체 보상제도가 없는 기관의 경우 보상신청을 위원회로 연계시켜 접수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회로 공공기관에 신청한 사건을 보상 신청하는 것으로 접수되어 처리 됩니다.

12.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

Q 사례 검색 시스템은 어떤 경우 필요한지요?

A 신고 사례 검색 시스템은 신고자 및 공공기관 담당장가 신고 및 처리 시 유사사례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외에 상담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위원회 처리건을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처리사례 1,000건을 제작하였으며, 내년 공공기관 신고 유형별 사례 1,000건을 추가 제작하여 기존 상담 사례 등에 추가 하여 제공 예정입니다.

13. 본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

Q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요? 제로미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본 시스템은 제로미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부패신고 유형별 신고처리과정 및 이첩관리와 반부패 시책, 청렴교육 실적, 공익신고 운영 실적, 행동강령 위반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반부패 업무 처리 절차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청렴도, 공공기관의 자체 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보를 '부패방지 공공기관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용신청을 한 기관에 대하여 '19년 자체 신고 접수 창구 여부 등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후 '1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시스템에 통합된 반부패 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반부패 분석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Memo

Memo

Memo